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청렴감사실장)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2. 제안이유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등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규정 실현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제4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6조)
-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9. 22. ~ 10. 1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은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음. 우리 구 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등으로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우리 구 청렴도 평가 결과〉

연도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비고
2022년	81.5점(2등급)	88.3점(1등급)	81.9점(2등급)	
2023년	81.7점(3등급)	82.9점(2등급)	82.9점(3등급)	
2024년	84.8점(2등급)	83.7점(2등급)	86.4점(2등급)	

-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감점)
☞ 1~5등급으로 발표
- ▷ 청렴체감도: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 청렴노력도: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전략과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며, 근로 및 복무를 관리하는 구분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복무총괄부서”란 공무원근로자의 현원관리 및 복무를 총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다만, 환경공무원의 경우에는 청소과로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적 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

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